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42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이인영·조계원·민병덕

임광현 · 장철민 · 이학영

전용기 • 박상혁 • 이정문

김용만 · 김성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및 제28조의2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접촉"을 "접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접촉"을 "접촉하거나 북한에 전단 또는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금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단등"이라 한다)을 살포(선전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접촉"을 "접촉 또는 전단등 살포"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북한의"를 "북한"으로, "접촉하거나"를 "접촉 또는 전단등을 살포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남북한 주민 <u>접촉</u>) 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u>접촉 등</u>)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	접촉하거나 북한에 전단 또는
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조기억장치・금전 등을 포함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	다. 이하 "전단등"이라 한다)을
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살포(선전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
	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
	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
	<u>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3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u>접촉 또는 전단등 살포</u> -
때에는 남북교류 ·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	
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저의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u>북한의</u>주민과 <u>접촉하거나</u>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3. ~ 6. (생 략)
- ②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세28조의2(과태료) ①
 1 /ᅯ체기 가 O \
1. (현행과 같음) 2
<u>북한</u>
<u>접촉 또는 전단등을 살포하</u>
거나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